

에이지테크연구소 규정

시행일: 2025.03.28

전문

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패러다임 전환과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급격하게 증가하는 새로운 고령자 욕구를 해결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, 고령자 및 고령친화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다학제적·융합적 교육서비스, 맞춤형 공동연구, 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반의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에이지테크연구소를 설립한다.

제1조(명칭)

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부설 에이지테크연구소(AgeTech Research Institute 이하 ‘연구소’라 함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와 에이지테크산업 관련 유관기업 간 연계를 통한 연구, 교육, 컨설팅, 사업수행을 동시에 유기적 수행과 대학원생의 교육-연구-취업 등이 산학간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 제반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학문적 및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플랫폼 기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
- 문제해결형 인력 양성 사업
-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사업
- 제품 및 서비스 맞춤형 컨텐츠 사업
- 학교-기업 주도 네트워킹 및 공동연구 등의 산학협력사업
- 기타 연구소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

제5조(구성원)

-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, 부연구소장,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연구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다.
- 전문연구원, 객원연구원, 일반연구원 등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실무업무를 담당한다.
- 연구소는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본교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중에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연구소장)

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
- 연구소장 연구소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유관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 추천,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.
-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추천,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조직)

- 연구소는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으며, 이 외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2. 자문위원회
3. 에이지테크 R&D연구센터
4. 에이지테크 실증센터
5. 에이지테크 교육센터
6. 에이지테크 네트워킹

② 각 위원장 및 센터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며,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연구소의 조직
 2.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 3. 연구소의 연구방향 조정
 4.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연구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요원 등의 인사 관련 심의
 5.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
 6. 연구소 관련 제 규정(내규 포함)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문위원회) 연구소의 주요 정책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성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2.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3.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.

제10조(에이지테크 R&D연구센터) 연구소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R&D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1. 에이지테크 R&D연구센터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기획하고 연구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.
2. 에이지테크R&D연구센터는 센터 내에 연구수행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둘 수 있다.

제11조(에이지테크 실증센터) 연구소는 과학적인 실증활동을 위하여 에이지테크 실증센터를 둘 수 있다.

1. 에이지테크 실증센터 산하 CRO(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)팀을 구성하여 고령친화산업 및 AgeTech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활동을 지원한다.
2. 에이지테크 실증센터는 실증 수행을 위한 리빙랩 등의 실증 장소, 실증평가장비 전반을 관리한다.
3. 외부 요청에 따른 실증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에이지테크 교육센터) 연구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에이지테크 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.

1. 에이지테크 교육센터는 대학원 교육 및 에이지테크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과과정을 지원한다.
2. 외부 요청에 따른 수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에이지테크 네트워킹) 연구소는 기업·기관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에이지테크 네트워킹을 둘 수 있다.

1. 에이지테크네트워킹은 대학과 기업·기관 간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한다.
2. 네트워킹 활동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,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운영 및 관리한다.

제14조(재정)

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 연구비
2. 대외 연구비
3.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련 기타수입

제15조(회계)

- ①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②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- ③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16조(보칙)

- ① 본교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제 규정에 따른다.
- ② 이 연구소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